

2022-1학기 및 여름학기(연계) 현장실습(HY-WEP) 실습생 참여신청 안내

한양대학교 현장실습프로그램 (HY-WEP : HanYang Work Experience Program) : 현장실습은 산학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학교 밖 연장된 경험학습을 하는 수업방법입니다. 전공수업과 연계된 현장 실무 경험은 학과 학생들의 사회진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

프로그램 안내

1. 실습기관 :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 모집된 기업, 공공기관, 정부기관, 연구소 등
2. 실습기간 :
 - (1) 1학기 과정 : 2022년 3월 2일(수) ~ 6월 21일(화) 중 약 16주 이상
 - (2) 여름학기 연계 과정 : 2022 1학기+ 여름학기 : 2022년 3월 2일(수) ~ 8월 31일(수) 중 24주 이상
 * 연계 과정의 경우 기관에서 모집공고 시 연계를 명시함
3. 실습대상 :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3~4학년 재학생 중 최소 4학기(편입생은 1학기)이수(예정)자
*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참여 가능 / 2022년 8월 졸업예정인 학생은 2022년 여름학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
4. 지원사항 :
 - 가. 학점 : 1) 1학기 : 학과심사에 따라 최대 15학점(전공학점 9학점, 나머지 6학점은 일반선택 또는 일반교양)
2) 여름학기 : 3학점(일반선택)
 - 나. 실습 지원금 : 1) 실습기관지원금 : 월 최저임금의 75%(2022년 기준 약 144만원/월 (세금포함금액)) 이상
2) 대학지원금 : 월 40만원 * 대학지원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변동 시 재공지
5. 진행일정

기 간	진행사항	비고
1월 4일 ~ 계속	실습기관 참여신청 접수	- 기관별로 모집 전형 일정이 다름 - HY-WEP 접속 후 기관 목록에서 세부 모집일정 확인
1월 6일 ~ 1월 31일 ~ 2월 18일	(1차 일정) 재학생 접수 및 선발 (추가 일정) 재학생 접수 및 선발	
2월 21일 ~ 25일	선발생 대상 사전교육(기간 중 하루, 온라인)	
실습 시작 시	3자 협약서 작성	실습 시작 전 E-mail 전달 예정

2022-1학기 현장실습 수강 자격 정리

- 학기대체와 선택형 4+1 자격에 일부 차이가 있음에 유의

학생의 상태	비고	학기 대체	선택형 4+1
2022-1학기가 수업연한 초과한 학업연장학기임	단, 4+1 이수 후에는 정규학기(학업연장학기 포함)가 한 학기이상 남아있어야 함	수강 불가	수강 가능
2021-겨울학기까지 현장실습 이수학점을 18학점 완성	4+1은 기존 현장실습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재학 중 2회 수강 가능	수강 불가	수강 가능
2022-1학기 이전에 학기대체 장기현장실습을 이미 이수	학기대체 현장실습은 재학 중 1회만 가능, 다만 4+1 장기현장실습은 이와 별도로 2회 까지 가능	수강 불가	수강 가능
2021-겨울학기까지 졸업요건 완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신분 예정	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불가	수강 불가	수강 불가
2022-1학기에 휴학생 신분 예정	재학생 신분으로만 가능 (휴학생인 경우 3.1. 이전 까지 복학하면 가능)	수강 불가	수강 불가
2021-2학기 까지 최소 4학기(편입생은 1학기)를 수료하지 않음	최소 4학기(편입생1학기) 수료해야 가능	수강 불가	수강 불가

2022-여름학기 현장실습 수강 자격 정리

학생의 상태	계절학기
최소 4학기 수료자(편입생은 최소 1학기 수료자)	수강 가능
2022-여름학기에 휴학생 신분 (계절학기 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수강 가능. 단, 1학기 및 2학기 현장실습은 휴학생 수강 불가)	수강 가능
2022-2학기 학업연장 재수강 예정자	수강 가능
2022년 8월 졸업예정자	수강 불가
2022년 1학기 까지 졸업요건을 완성하고, 2022년 2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(졸업유예) 신분 예정	수강 불가

기타

1. 실습 지원은 한번에 한 기관만 신청 가능하며, 탈락 시에 다시 지원 가능
2. 현장실습은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,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.
3. 실습시간 : 1일 8시간, 주 40시간 이하 원칙(중식 등 휴게시간 제외)
4.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의 지위를 가짐(단, 산재보험 처리 시 '근로자'로 분류됨)
5. 실습기관은 특별한 협약사항이 없는 한 실습생을 채용할 의무가 없음
6. 실습기관에서는 모집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7. 실습지원비는 숙식비, 교통비, 실습 수행비, 교육 장려금의 성격임. 단, 금전으로 제공
7. 실습기관에서 제공하는 실습지원비는 세금을 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(세액은 최소 3.3% 부터 그 이상 가능)
9. 실습 1개월 당 1일의 휴가부여
10. 현장실습 수행 학기 동안 현장실습 학점 외 다른 학점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취득 불가
* 다만 현장실습 일정 및 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봉사 학점 취득은 가능
* 계절학기 현장실습의 경우 온라인 1강좌 동시 수강 허용